

의안번호	2217426
의 퇴 인	이광희의원
회 답 일	2026.7.2.
추계번호	26D1406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 제2항(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)	-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“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”하도록 명시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 제2항(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 제2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①물가 변동 및 ②설계 변경, ③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, 홍수, 지진,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현행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같은법 시행령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(제73조),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(제74조), 그 밖에

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(제75조),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(제75조의2) 등을 규정하고 있음

- 시행령 제75조는 공사기간·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, 제75조의2는 호우·해일·가뭄 등 자연현상, 전쟁·사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

□ 한편, 현행법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¹⁾

- 이 중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은 현행법 상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,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의 간접공사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상황임
 - －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름

[참고] 장기계속계약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(2014다235189)

- 사건 내용: 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이 변경된 이후,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증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 청구를 구한 사건
- 판결내용 요지
 - －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,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,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님
 - －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이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(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조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어 현행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음)

1) **현행법 제24조(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·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.
1.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
2. 「지방재정법」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

- 개정안은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음
- 다만 향후 발생할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총계약기간이 연장될 공사를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으며, 총계약기간 연장 시 발생하게 될 간접공사비 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정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